

의안번호	제 2023 - 7호
보 고 연 월 일	2023. 4. 24. (제12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제153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II.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2
1. 설정 범위 검토 .....	2
2. 유형 분류 검토 .....	3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	4
4. 양형인자 검토 .....	6
III.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17
1. 설정 범위 검토 .....	17
2. 유형 분류 검토 .....	19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	23
4. 양형인자 검토 .....	24
IV.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34
1. 형종 선택의 기준 검토 .....	34
2. 권고 형량범위 검토 .....	41
3. 양형인자 검토 .....	56
V. 양형기준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61
VI. 향후 일정 .....	63

---

**【별첨】**

김용민,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김한울, “관세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최형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강선주,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최형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강선주, 김한울, “교통범죄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최형준, “양형기준 정비결과 관계기관 의견 검토”



# I. 제153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2023. 4. 10.(월) 16:00 ~ 18:00
- 장소: 대법원 404호 회의실

##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김혜경, 박복순, 박성훈, 이민우,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II.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1. 설정 범위 검토

#### 가. 설정 대상범죄 추가

- (1) 의견 요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범죄 양형기준 추가(한국여성변호사회)

위 조항 범죄는 관세포탈, 감면,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발생빈도가 적거나 없더라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 설정시 부정수입 범죄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범죄의 경우 종전 전문위원 회의,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었는데,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보임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의 개정 연혁을 볼 때 위 각 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유형의 정의’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등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조세범죄,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군과 그 체계를 달리하게 되고, 나아가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적용도 복잡해짐

- 관세포탈 또는 부정수입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두더라도, 그에 따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유형별, 영역별로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해짐

- 선고사례가 없는 점,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범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유형 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 나. 벌금형 및 추징액 산정기준

### (1) 의견 요지: 벌금형 및 추징액 산정기준 보완 필요(대한변호사협회)

관세범죄는 일종의 채무면탈 목적 이윤범죄로 돈과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고, 징역형 못지 않게 벌금액이나 추징액에 관심이 많으며, 벌금액 또는 추징액에 대한 법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집행의 확보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의 핵심이 됨. 따라서 벌금형 및 추징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양형위원회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의결(2022. 3. 28.)에 따라 향후 벌금형 설정대상 범죄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세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가 검토될 것임
- 관세법은 추징과 관련하여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심리 과정에서 추징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양형기준과 같은 추징액의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세법 제282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유형 분류 검토

### 가. 양형기준 유형분류 변경

#### (1) 의견 요지: 대유형 분류 수정(한국여성변호사회)

① 조세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대유형을 일반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 범죄로 구분

② 대유형을 행위유형에 따라 (1)관세포탈, (2)무신고수출입 등, (3)부정수출입 등, (4)밀수품 취득으로 분류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조세범 처벌법상 일반 조세포탈 범죄는 세목별, 과세기간별, 납세의 무자별로 1죄가 성립되는 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는 세목과 관계없이 1년 동안의 포탈세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1죄가 성립함 → 일반 조세포탈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가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중경합범으로 취급함
- 반면, 관세포탈 범죄는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법 모두 각각의 허위수입신고 시마다 1죄가 성립하고,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가중처벌 →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하나의 대유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종경합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함
- 대유형을 (1)관세포탈, (2)무신고수출입 등, (3)부정수출입 등, (4)밀수품 취득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 무신고수출입 등과 부정수출입 등의 대유형 아래에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무신고수입, 무신고수출과 부정수입, 부정수출을 각각 소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형기준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함
- 양형기준안과 같이 보호범의익이나 행위태양 등이 유사한 무신고수입, 부정수입 및 무신고수출, 부정수출을 각각 하나의 대유형 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 가. 무신고수입, 부정수입



## (1) 의견 요지: 1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하향 조정(공청회)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통고처분으로 처리됨에 비추어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 또는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적·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낮으며, 법정형 유사범죄와 달리 행정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비교적 쉽게 유죄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범위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가능한 죄질 또는 사안이 경미한 범죄들은 통고처분 또는 구약식 절차를 통해 처리되거나 구공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양형기준안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통고처분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과 양형기준안 적용 대상 사건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움
- 형량분포를 보면, 권고형량 범위의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8월 미만으로 선고된 사건의 비중은 전체의 22.95%인데, 권고형량 범위의 기본 영역을 현재보다 더욱 하향하여 예컨대 그 하한을 8월이 아닌 6월로 변경한다면 감경 영역의 비중이 전체의 4.65%에 불과하게 되므로 각 영역 간의 균형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되어 오히려 특별감경인자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됨
- 무신고수입의 경우, 동일한 법정형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였음. 무신고수입 1유형의 기본영역은 8월 ~ 1년6월인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기본영역)의 5만 리터 미만은 4월 ~ 10월, 5만 ~ 50만 리터는 8월 ~ 1년6월, 50만 리터 이상은 1년 ~ 3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무신고수입 범죄의 통계분석상 평균형량은 10.02월임)
- 부정수입의 경우, 동일한 법정형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였음. 부정수입

1유형의 기본영역은 6월 ~ 1년2월인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기본영역)의 30억 미만은 6월 ~ 1년, 30억 ~ 50억은 8월 ~ 1년2월, 50억 이상은 1년 ~ 2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부정수입 범죄의 통계분석상 평균형량은 7.80월임)

## 나. 관세포탈

### (1) 의견 요지: 1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하향 조정(공청회)

통고처분 대상인 포탈세액 2,000만원 미만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형사정책적 이유 등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포탈세액 2,000만원 미만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가능한 죄질 또는 사안이 경미한 범죄들은 통고처분 또는 구약식 절차를 통해 처리되거나 구공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양형기준안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통고처분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과 양형기준안 적용 대상 사건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움
- 관세포탈 1유형의 기본영역은 6월 ~ 1년2월인데, 법정형이 동일한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기본영역)의 경우 1년 ~ 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기본영역)의 경우 30억 미만은 6월 ~ 1년, 30억 ~ 50억은 8월 ~ 1년2월, 50억 이상은 1년 ~ 2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4. 양형인자 검토

### 가. 특별감경인자

#### (1)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무신고수입)

(가) 의견 요지: 특별감경인자 삭제 및 보완(공청회)

- ①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될 것인데,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주형의 감경 없이 추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함. 위 특별감경인자는 삭제하고 국내 유통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양형기준안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정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처리하면 됨
- ② 필요적 몰수추징 선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불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 양형에 참작하는 방안을 제안함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관세법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몰수·추징은 부가형에 해당하므로, 부가형인 몰수·추징 여부를 주형에 관한 양형인자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는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여 결과반가치가 감소한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대응되는 양형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실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은 위조품, 수출용 담배, 마약 등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을 밀수입하는 경우인데(무신고 수입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이러한 밀수입 범죄에서 몰수·추징의 선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불만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움
-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추징을 둔 것은 입법정책적인 결정이고, 위조품, 수출용 담배, 마약 등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이러한 물품들은 그 물품원가에 비해 시중에 판매하였을 때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품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되는 경우가 몰수되는 경우에 비해 반드시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음

## (2)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무신고수출 등) ⇨ 견해 대립

### (가) 의견 요지: 특별감경인자 삭제 및 보완(공청회)

- ①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후에는 폐기 또는 유통 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폐기 또는 회수된 물품이 수출한 물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밀수출죄가 성립한 이상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점, 수출품 자체가 갖는 폐해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음
- ② 필요적 몰수추징 선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불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 양형에 참작하는 방안을 제안함

### (나) 검토

#### ① 제1안(12인): 현행 유지

- 관세법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몰수·추징은 부가형에 해당하므로, 부가형인 몰수·추징 여부를 주형에 관한 양형인자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특별감경인자 포함 여부에 대하여 전문위원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양형기준안이 마련되었음(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수출품 자체가 갖는 폐해 및 위험 발생에 관한 특별가중인자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논거)
-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대응하는 특별감경인자로 필요하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보임

**② 제2안(2인):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및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 양형인자 각각 삭제**

-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①수출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후에는 폐기 또는 유통 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폐기 또는 회수된 물품이 수출한 물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이미 무신고 수출된 이상 사후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음
- 특히 관세범죄에서는 국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의 문서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또는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수입자가 보낸 서류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한 물품의 유통 여부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된다면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출하여 양형자료로 낼 것이 예상되고,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형자료의 진위 여부가 문제됨
- 이때 재판부 또는 공판검사가 해당 물품이 통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타국의 세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보통 회신을 거의 주지 않는 국가가 많고, 가사 회신을 해주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해당 물품이 통관은 되었으나, 타국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압수된 관계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역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타국 세관에서의 통관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타국가의 법령에 따라 유통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면 타국가의 어떤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내지 실무적 이유에 비추어 수출 물품의 타국에서의 유통 여부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제1안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인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대응하는 특별감경인자로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논거인데, 위 특별가중인자 역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그와 같은 실무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 의견임

### (3)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관세포탈) ⇨ 견해 대립

####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일부 삭제(공청회)

정의규정의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중 관세 초과 납부는 수입신고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매입원가를 높여 이익을 적게 보임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금액에 맞추어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같이 관세포탈과 수입가격 고가조작은 각각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수입업체가 납부하는 관세 총액의 변동폭만을 기준으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나) 검토

##### ① 제1안(9인): 현행 유지

- 위 정의규정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이고, 관세포탈 범죄에 관한 다수의 양형실무에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되고 있음
- 정의규정의 내용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취득의 부당한 목적 없이 단지 관세를 초과 납부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한

것임

- 실제 양형인자 반영 여부는 양형심리과정에서 판단될 것임

**② 제2안(5인):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삭제**

-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해당 예시적 정의규정으로 인해 ①판매 물품의 원가를 낮추어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경우나 ②매입원가를 높여 이익을 적게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③이미 단가가 확정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는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금액에 맞추어 높게 신고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적 규정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만으로도 해당 감경인자를 적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따라서 공청회 의견대로 삭제 의견임

**(4)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무신고수입 등)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일부 삭제(공청회)**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하나로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들고 있음. 그러나 밀수입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정상통관된 물품으로 가장하여 일반 시가로 판매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경우 모두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수입물품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이득액의 경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나) 검토

### ① 제1안(11인): 현행 유지

- 위 정의규정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이고, 다수의 양형실무에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되고 있음
- 정의규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무신고수출입이나 밀수품 취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시가가 하락하는 등 사정으로 유통으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의미함
- 공청회 의견과 같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나, 위 정의규정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양형심리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② 제2안(3인): 정의규정에서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삭제

-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해당 예시적 정의규정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적 규정으로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만으로도 해당 감경인자를 적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따라서 공청회 의견대로 삭제 의견임



## 나. 특별가중인자

###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관세포탈)

####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세분화 또는 보완(공청회)

- ① 정의규정 중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를 별개의 가중인자로 보아야 함
- ② 정의규정 중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는 다른 정의규정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또는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함
- ③ 증거인멸은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4항에 해당할 수 있어 이중평가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별도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함(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필요)

####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하나의 양형인자 내의 정의규정에서 여러 개의 인자를 나열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한 개의 양형인자로 고려함 → 정의규정에 중복하여 해당하더라도 한 개의 양형인자로 평가됨
- 정의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의 양형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용이 다소 중복되거나 해석이 일부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양형인자 평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위 정의규정의 ‘증거인멸’은 행위자가 사전에 증거인멸을 준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상 증거인멸이나 관세법 제276조 제4항 범죄와는 그 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함

## 다. 일반감경인자

### (1)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

## 상되는 경우(관세포탈)

### (가) 의견 요지: 감경인자로 부적절(공청회)

피고인의 자발적 반성이 아니라 국가의 집행에 의한 경우인데 감경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관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경인자로 반영함이 적절함
- 조세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범죄에서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음

## (2)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무신고수입)

###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수정(공청회) 및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국여성변호사회)

① 최근 밀수입은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감경요소는 적절하지 않고, 정의규정의 단서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② 무세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유세품과 달리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범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유세품의 밀수입에 비하여 낮은 법정형을 설정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별양형인자에 '무신고 대상이 무세품인 경우'를 감경인자로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무신고수입의 부수적 보호법익으로 정당한 관세수입의 확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수입한 물품이 무세품인 경우 감경인자로 반영함이

적절함

- 다만 위조상품이나 마약과 같이 유통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단서를 규정한 것임
-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는 형태의 밀수입은 부정수입에 해당할 여지가 커 무신고수입과 관련된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음
- 양형기준안은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삼고 있음. 무신고수입 범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경우 무세품인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 라. 양형인자 추가

### (1)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

#### (가) 의견 요지: 감경인자 추가(대한변호사협회)

관세범죄 관련하여 법령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며, 실제 사안에서 수출입 신고 대상 여부를 알기도 쉽지 않고, 정책적인 내용이 많아 위법성 인식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관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관세법의 복잡성이나 기술성, 행정법 특성 등에 비추어 관련 법령의 무지와 부주의 때문에 관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는 없음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Ⅲ.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1. 설정 범위 검토

##### 가. 벌금형 양형기준

###### (1) 의견 요지: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대다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어 징역형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양형위원회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2022. 3. 28. 제11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 위와 같은 설정 원칙에 따라 이번에 교통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향후 벌금형 설정대상 범죄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됨

##### 나. 미수범죄 양형기준

###### (1) 의견 요지: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에 대한 양형기준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정보통신망 침입)는 같은 조 제2항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범을 제외하고는 미수범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 다. 설정 대상범죄 추가

- (1) 의견 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 설정 범위 포함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행위태양이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1유형(개인 정보 부정취득 등)과 유사하여 같은 유형에 포섭 가능함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양형자료조사<sup>1)</sup>에 처벌사례가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 이용범행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대상인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에 비해 필요성, 시급성이 낮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보호법익이 달라 개인정보 등 침해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묶기도 어려움

## 라. 스토킹범죄와의 관계

- (1) 의견 요지: 소유형 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은 스토킹범죄와의 관계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소유형 1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범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함  
○ 스토킹범죄의 양형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소유형 1의 적용대상 범죄가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유형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고, 소유형 1의 구성요건과 유사함

1)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대상,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이하 동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그러나 양형기준안의 [유형의 정의]에서는 소유형 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구성요건과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됨
- 소유형 1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범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스토킹범죄는 적용법조와 법정형(소유형 1: 1년 이하의 징역,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이 서로 다르므로,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다만,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 상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 유형 분류 검토

### 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1) 의견 요지

- 소유형 1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같은 항 제11호(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훼손 등) 위반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소유형 2)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 소유형 1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정보통신망 침입), 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유발), 제11호(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훼손 등)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소유형2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같은

항 제10호, 제11호는 ‘장애유발이나 정보훼손 등’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를 처벌하여 행위태양이 상이함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70조의2와 구성요건이 서로 유사함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의 평균형량(9.6월)이 같은 법 제70조의2의 평균형량(8.72월)보다 높음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훼손 등)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정보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훼손 등)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 침해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정보통신망 침입), 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유발)와 달리 정보통신망 침해로 인하여 실제 정보 또는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서 다른 구성요건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소유형은 형량범위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을 것인지는 그 범죄가 형량범위를 공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법정형은 책임의 경중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형량범위 공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5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 동일함
- 형량범위 공유 여부를 살피기 위해 양형통계도 검토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70조의2는 5년간 통계자료가 10건 내외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정보통신망 침입 등 범죄보다는 개인정보 또는 비밀 침해범죄와 행위 유사성이 더 크다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나, 위 구성요건에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은 행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정보통신망 침입등 범죄와 양형인자를 공유 할 수 있는 점, 법정형이 동일한 점에서 별도 위 범죄 하나만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의 중대



- 성'이라는 양형인자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혀 이질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나.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1) 의견 요지: 소유형 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과 소유형 2(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소유형 1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성질을 가지고, 소유형 2는 불법 자금유통 범죄의 성질을 가지므로 서로 이질적이고, 양형인자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요소가 제각각이 되어 혼란을 야기함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대유형 분류는 모든 범죄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지 않고 개별 범죄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다양한 분류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소유형 1(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과 소유형 2(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범행은 서로 보호법익이 다름. 그러나 위 각 소유형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일견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위 각 소유형을 묶어 대유형 명칭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라고 칭함으로써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중첩되는 양형인자도 다수 있어 양형인자 상당 부분 공유 가능

## 다.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1) 의견 요지: 소유형 2 중 민감정보<sup>2)</sup> 침해, 고유식별정보<sup>3)</sup> 침

## 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위반’, 제71조 제4호는 ‘고유식별 정보 처리제한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의 2유형에서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범행과 함께 포섭하였는데, 정보의 민감성에 비추어 다른 개인정보 범행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소유형 2 중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음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징역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를 알면서 제공받음	5년↓
		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또는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 / 이를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	
		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 처리	
		4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제3자 제공 / 이를 알면서 제공받음	
		6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형은 책임의 경중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형량범위 공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내지 6호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 동일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2, 5, 6호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아니지만 행위태양에 있어 제71조 제3, 4호와 차이가 있음

2)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3)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 양형자료조사 결과 제71조 제3호는 1건, 제71조 제4호는 사례가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되, 정보의 민감성 등은 양형심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미 가중인자로 되어 있는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권고 형량범위 검토

#### 가. 전체

##### (1) 의견 요지: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필요

다음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법정형에 비추어 낮아 상향할 필요 있음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가중영역의 상한 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3년6월(법정형 상한 5년), 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년(법정형 상한 7년)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2유형 가중영역의 상한: 2년(법정형 상한 3년)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3유형 가중영역의 상한: 5년(법정형 상한 10년)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위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규범적 조정을 가하거나 양형통계 중 가장 무겁게 선고한 사례를 가중영역의 상한으로 정함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양형자료조사상 2년을 선고한 사례가 가장 무겁게 선고한 사례였으나, 가중영역의 상한을 3년6월로 정함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양형자료조사상 1년6월을 선고한 사례가 가장 무겁게 선고한 사례였으나, 가중영역의 상한을 4년으로 정함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양형자료조사상 2년을 선고한 사례가 가장 무겁게 선고한 사례였고, 그에 맞게 가중영역의 상한을 정함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 양형 자료조사상 3년 선고한 사례가 가장 무겁게 선고한 사례였으나, 가중영역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함
- 또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가중된 처벌 가능

## 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가) 의견 요지: 소유형 1(정보통신망 침입 등) 권고 형량범위를 더 넓고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범행부터 해킹 범행까지 스펙트럼이 넓음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 유형이고, 같은 항 제11호는 정보통신망에 있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유형으로 범죄 유형이 다양함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형량범위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설정하되,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정하고 있음
- 소유형 1(정보통신망 침입 등)은 기본영역 형량범위가 6월 ~ 1년6월로 설정되어 있고, 위 형량범위는 대상범죄 통계의 80% 이상을 포섭하여 양형실무를 반영함
- 이미 중첩 구간이 적지 않고, 한 구간의 형량 범위도 3배~3.5배나 되므로 예측 가능성의 필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함이 타당

## 4.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감경인자

(1)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가) 의견 요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적용 곤란

정보통신망 침입 등,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는 고도의 기술범죄가 많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나 심신미약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감경인자임
-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감경인자임
- 위 각 인자가 범죄의 특성상 적용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자가 설정된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2)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가) 의견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감경인자 중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 삭제 필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범행의 경우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감경인자로 보기 어려움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는 영업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에 비해 행위불법이 가벼우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삼을 필요가 있음
-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였다면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적용함으로써 균형을 꾀할

수 있음

- 영업적, 장기간의 행위와 불법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광범위한 피해가 유발된 경우는 가중인자로 되어 있으므로 현행 유지 의견

### (3) 범행수단에 관한 감경인자 추가 여부

(가) 의견 요지: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범행사안 등의 경우 범행 수단에 관한 특별감경인자 필요

- 범행 수단에 관한 특별가중인자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범행 수단에 관한 특별감경인자도 필요함
-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우연히 연결된 타인의 SNS 계정에 침입하는 등 침입 수단이나 방법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는 등의 범행은 죄질에 따라 경미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중인자에 대응하여 반드시 감경인자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삼기는 어려움
- 다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에 관한 확정적 고의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여 주관적인 감경인자가 결합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감경인자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나. 특별가중인자

(1)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정의규정에 경제적 이익에 관한 규정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정의규정 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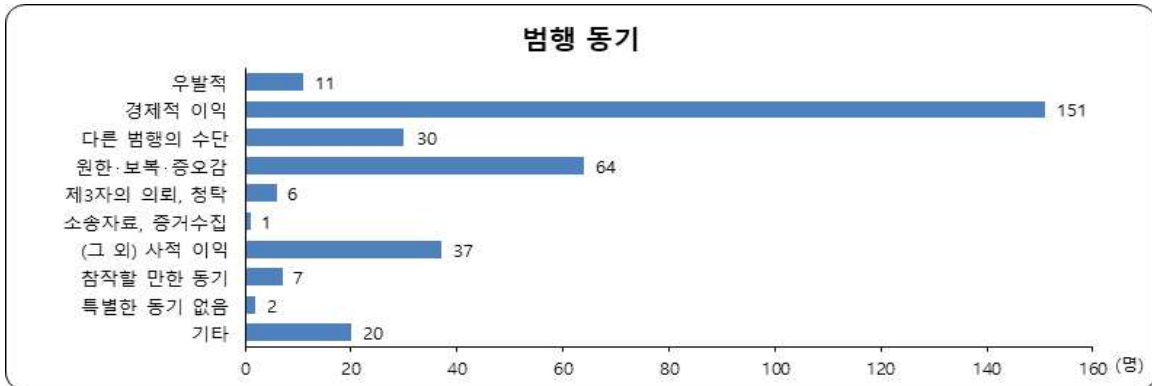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범행동기 중 가장 많은 것이 경제적 이익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에 있는 단순히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더 큼

- 유사범죄인 업무방해, 위증,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 정의규정에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

(나) 검토

① 제1안(10인): 현행 유지

- 양형자료조사에 나타난 범행동기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다수를 차지하는바,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정보통신망 범행의 기본이 되는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하는 경우 대부분의 범죄에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균형을 잃게 될 우려가 있음(범죄의 대가는 대부분 정당하지 않은 대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형심리를 통한 변별력을 피하기도 어려움)
- 특별가중인자에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인자를 규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아래 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대상범죄	가중인자	정의규정
위증·증거인멸범죄	경제적 대가의 수수	없음
체포·감금·유기·학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

범죄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유기·학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 중 강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업무방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 으로 한 경우

- 특히 위 의견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업무방해의 경우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결과<sup>4)</sup>에 의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음영 부분만 경제적 이익 목적)

조사내용	구분	수(명)	평균형량(월)	
범행동기	가정 불화	아님	244	6.54
		해당	3	5.33
	단순 시비	아님	191	6.63
		해당	56	6.16
	사회 불만	아님	245	6.53
		해당	2	5.00
	업무처리 결과 불만	아님	234	6.46
		해당	13	7.69
	원한·보복	아님	232	6.54
		해당	15	6.20
	노동쟁의 관련	아님	230	6.47
		해당	17	7.18
	정치적 목적	아님	245	6.53
		해당	2	6.00
	종교적 목적	아님	246	6.52
		해당	1	6.00
	채권채무관계	아님	235	6.49
		해당	12	7.08
	지정관계	아님	244	6.55
		해당	3	4.67
특별한 동기 없음	아님	173	6.80	
	해당	74	5.86	

② 제2안(4인): 정의규정에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4) 2014. 3.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결과,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범행한 경우” 또는 “범행 결과 제거를 대가로 한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추가**

- 양형자료 조사에 나타난 범행동기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범행동기를 차단할 필요성이 큼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 외에 단순 호기심에 의한 해킹 행위 또는 경쟁사에 대한 업무 방해 목적 등 다른 목적에 의한 범행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변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복구를 대가로 고객의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의 경우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해 불법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중 인자의 정의규정으로 둘 필요 있음
- ※ 본 범죄군의 설정 시 유사 범죄군으로 참고한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정의규정에 두고 있음

**(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정의규정에서 ‘다른 범죄의 수단인 경우’ 삭제 여부**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중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삭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위 정의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인자로서의 변별력이 낮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을 한 사례가 있고, 이를 범행동기 관련 가중인자로 참작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으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인 경우가 많지만,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표

현상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하였다든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가중인자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은 낮음

- 양형자료조사에 나타난 범행동기 중 '다른 범행의 수단'은 대상 인원 총 160명 중 30명으로, 대부분의 동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가중 사유로 볼 수 있고, 보이스 피싱 등 중요 범죄의 수단으로 범해 진 경우 이를 가중 사유로 둘 필요성도 있음

### (3)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가) 의견 요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본 인자 적용을 배제함으로 인해 불합리 가능성 있음

- 본 양형인자의 정의에는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동시에 다수의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등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다수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다수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다수범죄 모두에 대해 위 가중인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할 가능성 있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본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중인자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양형인자의 적용을 배제함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다수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예: 환경범죄 등)의 경우에도 위 배제규정과 유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4)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 의견 요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정의규정 일부 변별

## 력이 낮아 삭제할 필요

-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은 대부분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위 정의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도 다수 있음(예: 우연히 연결된 타인의 SNS 계정에 침입한 범행)
- 위와 같은 정의규정은 재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그 적용여부를 결정함 → 위 정의규정에는 ‘치밀한 계획’, ‘고도의 지능적 방법’, ‘전문적 수법’이라는 판단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 기타

### (1) 양형인자의 세분화

#### (가) 의견 요지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세분화 필요

-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의 행위태양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함
- 판례를 통해 드러난 행위태양을 분석하고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개별 양형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의 행위태양 중 ‘처리’의 세분화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처리”가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각 행위태양에 따라 불법의 크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판례를 통해 드러난 행위태양을 분석하고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개별 양형인

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하나의 구성요건 내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다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그에 따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기존 양형기준 마련 방식과 일치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어느 정도 전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인자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분화된 양형기준은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는 양형자료조사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유형화하여 기재한 것임
- 행위태양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개별 사건에서 양형심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2) 양형사례 상정이 어려운 양형인자나 정의규정 삭제 필요

(가) 의견 요지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 중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나) 검토: **현행 유지**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규정 중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사례
  -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그룹웨어에 침입
  - 자신과 동료 여직원에게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

이뤄진 것을 목격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취득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포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
- 홈페이지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

## IV.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1. 형종 선택의 기준 검토

#### 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 (1)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벌금형 선택사유에 관한 서술식 기준에 ‘초범’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추가 필요

벌금형 선택사유로서 ‘초범’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추가되는 것이 형법 및 양형기준의 취지와 체계에 합당하고 양형실무에 부합함.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권고 형량범위에서는 일반양형인자의 위상만을 가지지만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공정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로서 집행유예를 판단함에 있어 중하게 고려하고 있음
-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의 사유, 제62조의 집행유예의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인의 성행’ 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양형요소가 포함됨
-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의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양형요소가 중하게 고려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가벌성이 크지 않은 사례가 많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사안 중 ‘중과실, 일반 상해, 초범’이지만 중과실의 가벌성이 크지 않은 사례
  -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사안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초범’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피해회복 정도, 교통사고와 사망의 경위 및 가벌성의 정도 등 종합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사례

#### (나) 검토

##### ① 제1안(10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추가

- 교통사고는 과실범에 해당하고, 초범인 과실범의 경우 바로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영역을 좀 더 폭넓게 열어 둘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중과실5), 3주 상해, 초범'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에 위와 같은 사례가 다수 있고,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도 벌금형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위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자유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 위 영역에서 벌금형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음
- 기존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에 불과하여 특별감경인자인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그 위상에 차이가 있다는 반론이 가능함. 그러나 기존 양형기준은 형량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설정된 것이고, 위 서술식 기준은 형종 선택의 기준으로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그 기능이 다르고, 현행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요참작사유로 정하여 양형인자표와 차이를 두고 있음

## ② 제2안(4인): 현행 유지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에 불과한데,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확정된 권고형의 형량 범위를 무력화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 제1안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금번에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면서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권고 영역을 활용하여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의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벌금형 선택 가부 및 그 사유는 형량 범위 결정과 직접적으로

---

5) 특별가중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예: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 인자가 적용될 수 있음

연관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사유를 검토할 때 특별양형인자 및 형량 범위의 체계를 고려함이 타당

- 아울러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으로 정한 것임에도 다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은 형량 범위를 잠탈화하는 것이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지 의견임

## (2) 음주운전·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벌금형 선택사유에 관한 서술식 기준에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마약 포함)를 제외사유로 추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 위험운전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 (나) 검토

### ① 제1안(10인): 현행 유지

- 교통사고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음
- 벌금형 선택 사유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서 일률적으로 벌금형 선택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벌금형 선



택을 제외하면 위와 같은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② 제2안(4인): 제외 사유로 추가**

-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제외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교통사고 치사의 벌금형 선택사유에 관한 서술식 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제외 필요

- 치상 사고와 달리 치사 사고의 경우 처벌불원 외에 실질적 피해회복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공탁법 개정으로 유족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
- 벌금의 법정형 상한이 2,000만 원으로 가중구간의 징역형 권고형량 상한 3년과 비교(1년: 1,000만 원)하여 과경한 처벌 우려

(나) 검토

**① 제1안(10인): 현행 유지**

- 8기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규정하여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는바, 교통사고 치사에서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제외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무상 혼선의 우려가 있음
-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여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리한 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안(4인): 제외**

- 치상 사고와 달리 치사 사고의 경우, 처벌불원 외에 실질적 피해회복

- (공탁)을 포함함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탁법 개정으로 유족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벌금의 법정형 상한이 2천만원으로 가중구간의 징역형의 권고형량 상한 3년과 비교(1년: 1천만원)하여 과경한 처벌이 우려되므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제외 필요

## 나. 음주·무면허운전

### (1) 동종 전과의 범위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형종 선택의 기준이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를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수정할 필요

- 2023. 1. 3.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전과의 시적범위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23. 1. 3.>
-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용되는 전과의 범위보다 양형에 참작되는 전과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나) 검토

#### ① 제1안(11인): 현행 유지(5년 이내)

- 법정형은 해당 범죄의 전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고, 서술식 기준은 그 중 형종을 제한하는 사유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보다는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이 동종 전과의 범위가 음주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무면허운전,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포함하므로, 5년 이내 3회 동종 전과 사례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양형인자의 정의 3. 음주·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② 제2안(3인): 10년 이내로 수정

- '23. 1. 3.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2진 아웃의 처벌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전과의 시적 범위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용되는 전과의 범위보다 '양형'에 참작되는 전과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
- 특히 5년 ~ 10년 전 사이에 음주운전 등 전력이 다수 있는 재범자에 대하여 동종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지 형종 선택에 있어 가중할 만한 인자가 전혀 없는바, 이를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양형정책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0년 이내'로 수정 의견임

## (2) 벌금형 선택 가능영역의 제한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에 관한 벌금형 선택 가능 서술식 기준을 삭제할 필요

-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고, 특별가중·감경인자를 종합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할 우려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에 미흡하게 됨

(나) 검토

## ① 제1안(12인): 현행 유지

-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의 서술식 기준은 벌금형 선

택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양형기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양형사례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 있음
  -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 고속도로 음주운전, 동종 전과 없음 → 벌금 多
-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을 두고 있어 벌금형 선택 가능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아님

## ② 제2안(2인): 삭제 의견

-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가중영역에서조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고, 특별가중·감경인자를 종합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편차에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 의의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이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형량범위를 잠탈하는 규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의 가중구간에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음주 교통사고의 다수범죄 처리를 하더라도 각 가중구간에서조차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미흡함
- 따라서 삭제 의견임

## (3) 벌금형 선택 가능영역의 추가

(가) 의견 요지: 5년 이내의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선고유예 포함) 선고시 관련 법령이나 사내규범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벌금형 권고사유로 추가할 필요

많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임직원 인사규정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자유형 선고 시 신분상 이중적 불이익이 초래됨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관련 법령이나 사내규범에서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벌금형을 권고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고, 여론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함
-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은 다양한 중첩영역을 설정하여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형심리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 권고 형량범위 검토

### 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의견 요지: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향 필요

어린이 치상과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이 같게 설정되어 있으나, 어린이 치상은 과실범이고 치상 후 도주는 고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치상 후 도주를 어린이 치상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치상 후 도주 양형기준안은 위험운전 치상과의 형량범위 역전을 고려하여 기존 8월 - 2년6월 ⇨ 10월 - 2년6월로 상향함(= 어린이 치상 기본영역)

- 어린이 치상은 법정형이 1년~15년이고, 치상 후 도주는 1년 이상으로 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제외하고 법정형이 유사함[유기징역형의 상한이 다른 부분은 가중영역을 달리 정함으로서 해결함(어린이 치상: 2년 - 5년, 치상 후 도주: 2년 - 6년)]
- 어린이 치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으므로, 어린이 치상을 치상 후 도주보다 반드시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기 어려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이므로 중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치상 후 도주는 고의범이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 고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음
- 양형자료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최빈값이 징역 1년이고, 형량범위 상한 2년6월을 초과하는 사건은 1건에 불과하여 수정안의 기본영역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음 → 위와 같이 형량범위를 상향하였으므로, 양형사례가 축적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추가 상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6	8	10	12	14	15	16	18	20	22	24	26	30	36	42	48	60	84		108
제1	수	39	45	29	142	21	4	14	85	3	2	35	2	8	1	-	-	-	-	-	430
유형	비율	9.1	10.5	6.7	33.0	4.9	0.9	3.3	19.8	0.7	0.5	8.1	0.5	1.9	0.2	-	-	-	-	-	100.0

## 나. 음주·무면허운전

### (1) 음주운전 자유형 형량 강화

(가) 의견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범위를 상향하거나 집행유예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

- 택시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을 비판하는 의견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이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유형과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다수범 가중을 통해 가중된 양형이 가능함
-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 치사상의 경우 이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 위험운전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최대 10년6월(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위험운전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최대 15년(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위험운전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최대 10년6월(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상 2년 - 7년6월,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7년6월 + 3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최대 15년(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어린이 치사 4년 - 12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2년 + 3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상 후 도주: 최대 12년(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상 후 도주 2년 - 9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9년 + 3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사 후 유기도주: 최대 21년(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치사 후 유기도주 6년 - 18년, 음주운전 2년6월 - 6년 → 상한 18년 + 3년)
-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주요부정사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실행 권고의 가능성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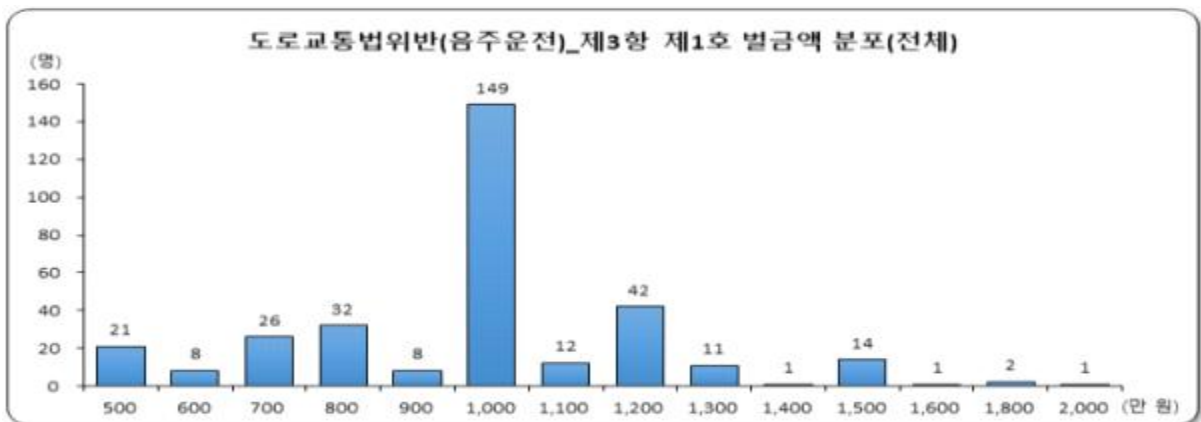
##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금형 형량 강화

### (가) 의견 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의 기본영역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벌금형 형량범위(벌금 1,000만 원 - 1,500만 원)가 다소 낮음

### (나) 검토: 일부 상향(상한 1,500만 원 → 1,700만 원) ⇨ 견해 일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이고, 양형통계상 가장 많은 벌금 1,000만 원이 기본영역에 포함되도록 설정함
- 양형통계상 벌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전체의 1% 남짓에 해당



-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종 선택의 서술식 기준에서 정하는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와의 균형상 상한을 일부 상향하기로 함
-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의 기본영역에 징역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중한 사안은 징역형으로 의율하면 족함

## (3) 음주운전 기본영역 형량범위

### (가) 의견 요지: 음주·무면허운전 2 내지 4유형 형량범위 중첩 필요



양형기준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기본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위반의 태양과 위험성이 현저히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본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될 필요가 있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음주·무면허운전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바, 법정형에 비추어 기본영역의 형량범위가 반드시 중첩될 필요는 없음

유형	구분	기본영역	법정형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법정형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통계에 비추어 형량범위가 과중하지도 않음
  - 2유형: 통계상 6월, 8월이 전체의 78.3% 기본영역에 포함
  - 3유형: 통계상 최빈값인 12월이 기본영역에 포함
  - 4유형: 통계상 최빈값이 12월이지만 이는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이므로 기본영역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

(4) 음주측정거부 형량범위 ⇨ 견해 대립

(가) 의견 요지: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보다 형량범위 상향 필요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보다 형량범위가 낮게 되면, 과음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택할 우려가 있음

(나) 검토

① 제1안(11인): 현행 유지

- 음주·무면허운전 4, 5유형의 형량범위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법정형이 더 높고, 규범적 조정도 법정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b>1,700만 원</b>	2년6월 - 4년	2년↑5년↓ 1,000만 원↑ 2,000만 원↓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 위험운전 치상, 어린이 치상,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와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음주측정거부는 위험운전 치상, 어린이 치상과의 법정형 관계를 고려하여 그보다 형량범위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규범적 조정은 곤란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1,000만 원↑ 3,000만 원↓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500만 원↑ 3,000만 원↓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 과음한 운전자가 일부러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의 경우 양형심리 과정에서 특별가중인자 중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② 제2안(3인): 상향 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6월 300만 원 - 1,200만 원	1년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그대로 응하여 측정된 경우와 음주측정거부한 경우를 비교하면 음주측정거부한 경우의 행위 태양 및 죄질 더욱 불량함
- 특히 공청회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측정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다수의 현장 경찰관이 단 한 명의 피의자 도주방지 및 교통안전을 위해 몇 시간 동안 현장에 발이 묶이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음
- 실제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 중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과음한 운전자가 일부러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의 경우 양형심리 과정에서 특별가중인자 중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에 일부 의문이 있음
- 실제 측정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보다 낮은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측정거부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불이익은 피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한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보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 하한이 낮기는 하나, 큰 차이는 아닐뿐더러 법정형 상한은 동일하므로, 현행보다 형량범위를 다소 조정하는 규범적 조정이 충분히 가능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검찰사건처리기

준에서도 음주측정거부의 감경구간 하한만을 좀 더 낮추되, 다른 구간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이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재 범 이 상	① 0.03% 이상 0.2% 미만	500-700만원 또는 6월-1년	700-1,500만원 또는 1년-3년
② 0.2% 이상			1,000-1,500만원 또는 1년6월-2년6월	1,500-2,500만원 또는 2년6월-4년	4년 - 6년
③ 음주측정거부			700-1,500만원 또는 1년-2년6월	1,500-2,500만원 또는 2년6월-4년	4년 - 6년

○ 따라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영역의 상한, 기본영역의 징역형 상한 및 벌금형 하한, 가중영역의 하한을 일부 상향 의견임

다. 서술식 기준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 견해 대립

▣ 양형기준안의 서술식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불명확하여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1) 일반 교통사고

① 제1안(11인)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년 ↓ 2,000만 원 ↓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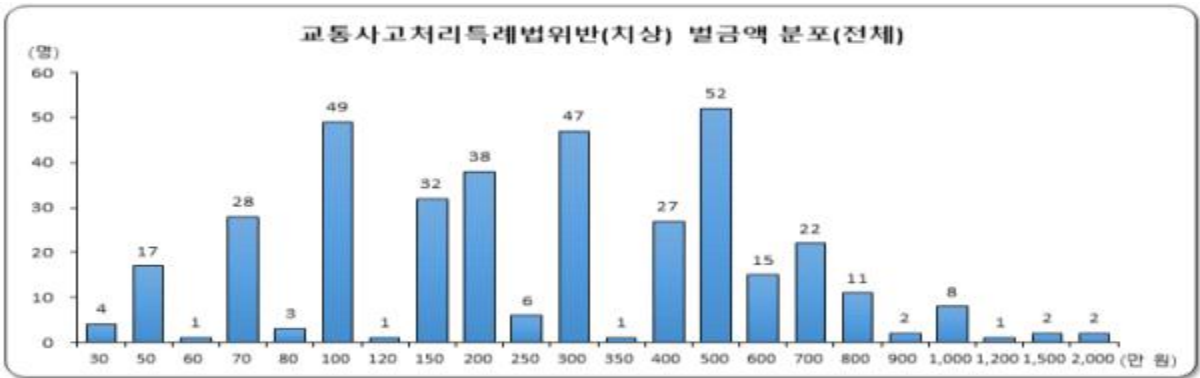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1,5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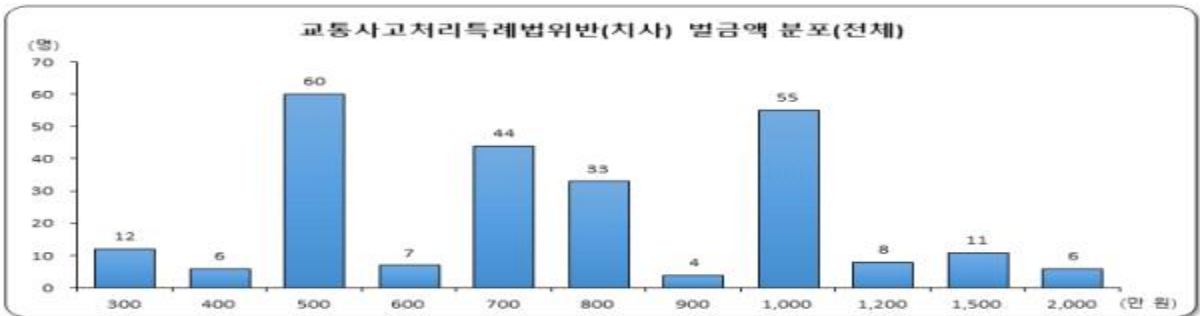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형량분포

▣ 교통사고 치상



▣ 교통사고 치사



- 금고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교통사고 치사는 법정형의 상한에 맞게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하고, 양형통계 및 결과의 경중에 비추어 교통사고 치상의 상한을 교통사고 치사의 상한에 비해 약간 낮게 설정함

② 제2안(3인)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	----	----	----	----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년↓ 2,000만 원↓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 벌금형 서술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애초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기준이 없는 것으로 설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임
- 위와 같이 벌금형 기준이 없는 영역에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감경/기본/가중 형량범위 구간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게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설정되어 있는 벌금형 상한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함이 규정함이 타당
- 따라서 1유형(교통사고 치상)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벌금형 상한인 1,200만원을 하한으로, 법정형 상한을 그 상한으로 설정하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벌금형 상한인 1,500만원을 하한으로 설정

## (2) 위험운전 교통사고

### ① 제1안(11인)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1,000만 원↑ 3,000만 원↓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형량분포: 8기 양형위원회 양형자료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표본 1,000만 원 2건, 1,200만 원 1건 총 3건만 있음)
- 금고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형의 상한에 맞게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함

## ② 제2안(3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1,000만 원↑ 3,000만 원↓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1유형(위험운전 치상)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벌금형 상한인 1,500만원 을 하한으로, 법정형 상한을 그 상한으로 설정

## (3) 어린이 교통사고

### ① 제1안(1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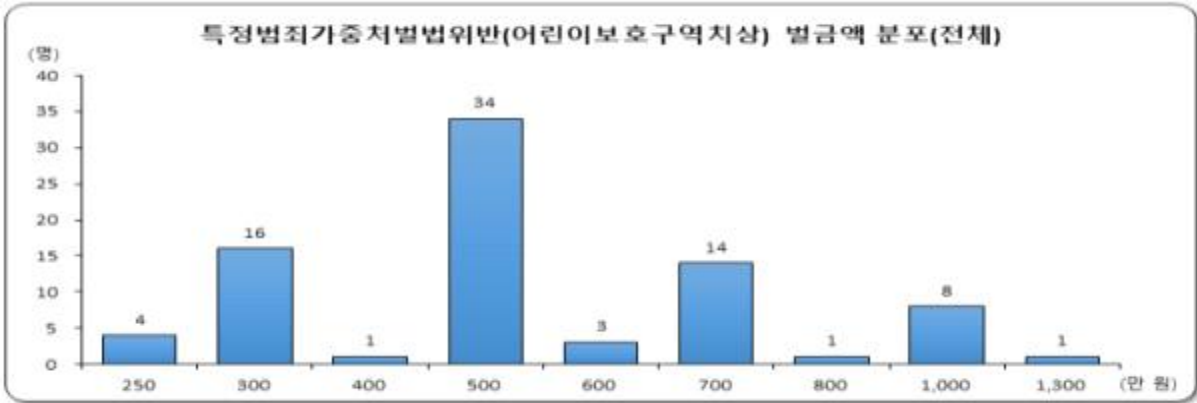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500만 원↑ 3,000만 원↓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형량분포



- 위험운전 치상(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보다 법정형 하한이 1/2 낮으므로 위험운전 치상의 벌금형 형량범위(1,200만 원 - 3,000만 원)보다 하한만 낮게 설정

② 제2안(3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 15년↓ 500만 원↑ 3,000만 원↓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설정되어 있는 벌금형 상한인 1,500만원을 하한으로, 법정형 상한을 그 상한으로 설정

(4) 교통사고 후 도주

① 제1안(1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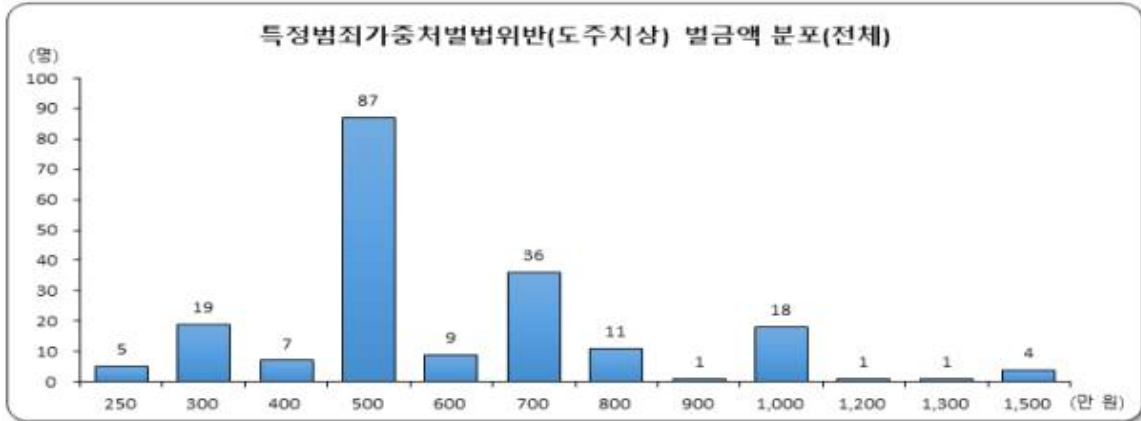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0월 - 2년6월	2년 - 6년	1년↑ 500만 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500만 원			3,000만 원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형량분포



- 어린이 치상과 벌금형 법정형(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동일하고, 같은 범죄군 내에 법정형 동일한 범죄와 다르게 불만한 사정 없음

② 제2안(3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1년 ↑ 500만 원 ↑ 3,000만 원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설정되어 있는 벌금형 상한인 1,500만원을 하한으로, 법정형 상한을 그 상한으로 설정

(5) 음주·무면허운전 ⇨ 견해 일치

▣ 서술식 기준 내 벌금형 구간 설정 및 양형기준의 가독성 제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sup>1)</sup>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sup>2)</sup>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sup>3)</sup>	1년 ↓ 300만 원 ↓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sup>1)</sup>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sup>2)</sup>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sup>3)</sup>	1년 ↓ 500만 원 ↓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sup>2)</sup>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sup>2)</sup>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sup>3)</sup>	1년 ↑ 2년 ↓ 500만 원 ↑ 1,000만 원 ↓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sup>2)</sup>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sup>2)</sup>	2년6월 - 4년 <sup>4)</sup>	2년 ↑ 5년 ↓ 1,000만 원 ↑ 2,000만 원 ↓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sup>2)</sup>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sup>2)</sup>	1년6월 - 4년 <sup>4)</sup>	1년 ↑ 5년 ↓ 500만 원 ↑ 2,000만 원 ↓

▷<sup>1)</sup>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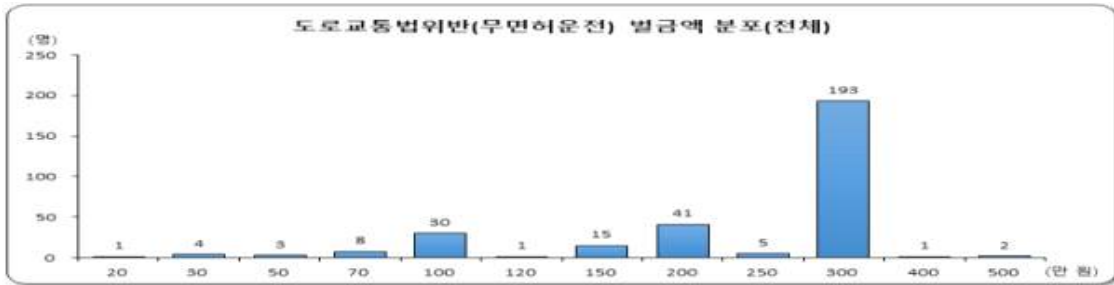
▷<sup>2)</sup>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sup>3)</sup>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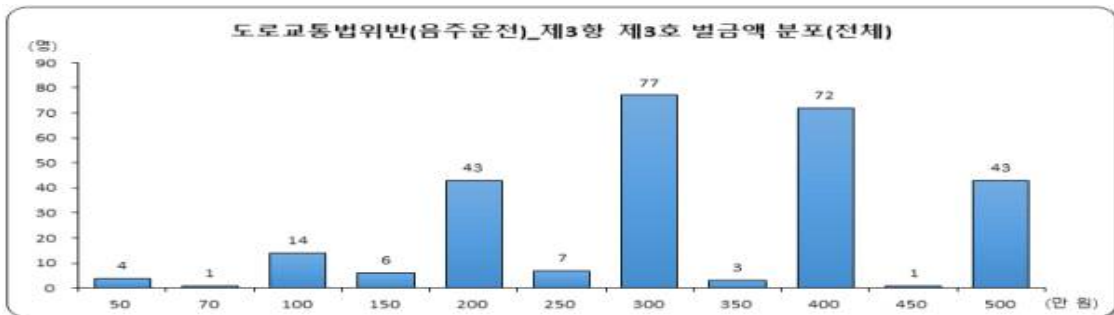
▷<sup>4)</sup>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형량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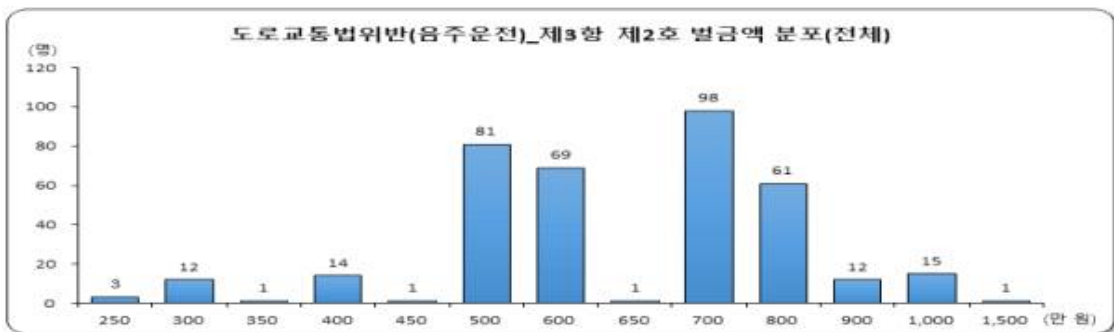
■ 무면허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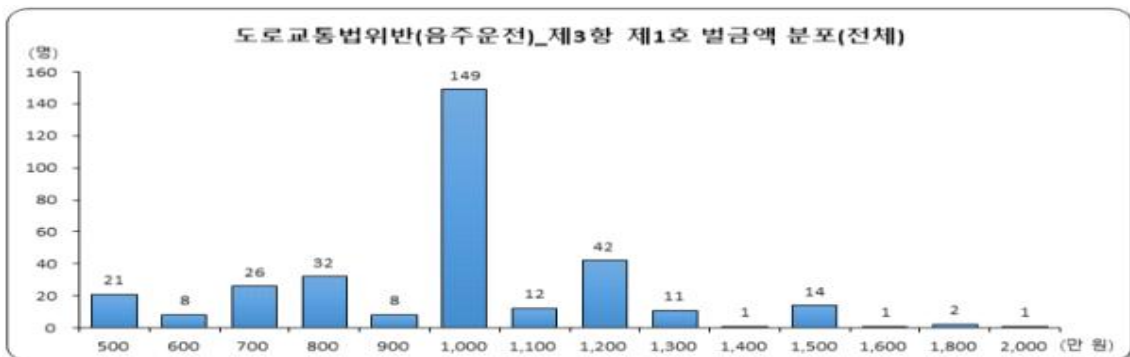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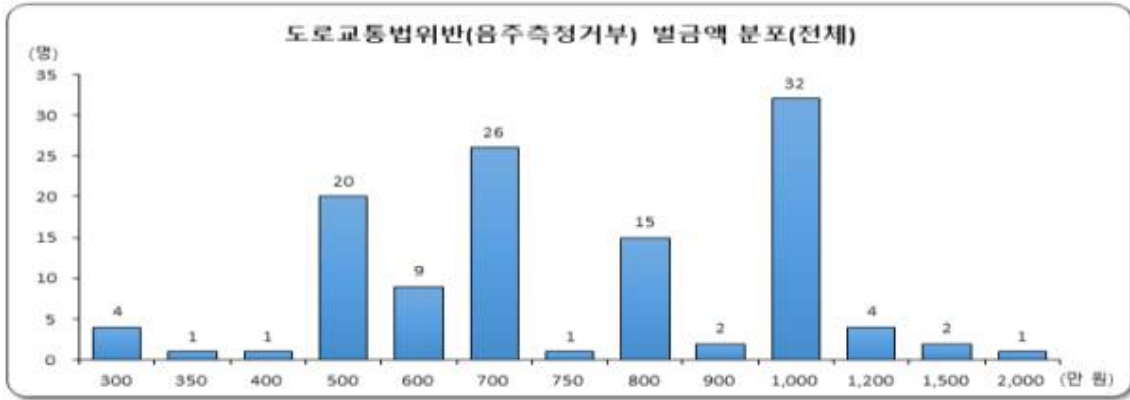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의 상한에 맞게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보다 약간 낮은 점에 비추어 하한을 약간 낮게 설정함

### 3. 양형인자 검토

#### 가. 전체

- (1) 의견 요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용어 사용의 적절성 및 지적장애 등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특별감경인자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부분은 청각 장애인이거나 언어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으로 수정하거나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수정할 필요
- 지적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행위자 관련 감경요소로 고려할 필요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형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특별감경인자 중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위 규정을 반영하여 포함된 것이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지적장애인은 감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양형인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나. 음주·무면허운전

### (1) 특별감경인자

#### (가) 의견 요지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대리운전 등의 사유를 삭제하고 ‘짧은 운전거리’로 한정할 필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규정에는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사안의 경우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일부 사안에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도 있고, 양형기준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면 긴급피난 판단을 회피하고 유죄를 전제로 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인자의 정의규정을 운전거리가 짧다는 것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의 정의규정에 주차를 위한 공간 반경을 설정하는 등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제시 필요

목적지 근처에서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의 경우 위험이 매우 낮다고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음

####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양형기준안의 음주·무면허운전의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은바, 운전한 거리뿐만 아니라 운전의 경위와 사정을 기재하였음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음주·무면허운전에는 다양한 경위와 사정이 개입되므로,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다고 형량을 감경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경우,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진 경우는 전형적인 경위와 사정에 관한 예시임

- 일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양형기준은 유죄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임
- 현행안에서 이미 본 인자를 적용할 한정적인 상황의 조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를 위해' 이동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므로 주차를 위한 공간 반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할 수 있음  
→ 양형심리를 통해 판단

## (2) 특별가중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에 인명피해의 경우도 예시로 추가

양형기준안의 정의규정에는 물적 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는 없어 이를 추가할 필요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에 해당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다시 가중인자로 삼는 경우 이중평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3)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인자 추가

(가) 의견 요지: '사고현장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인자로 추가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차량의 현장 방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의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함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 음주·무면허운전 5유형(음주측정거부)의 특별가중인자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그 정의규정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 그러나 단순히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한 것으로는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음주측정거부한 장소가 사고현장인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의 위험 및 불편이 반드시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한 것이 다른 경우에 비해 행위 불법 내지 결과 불법이 더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움
- 사고현장에서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위 양형인자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적용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양형심리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생각됨

#### (4) 일반감경인자 ⇨ 견해 대립

##### (가) 의견 요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삭제 필요

2023년 3월 기준 대부분(89.3%)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감경인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거나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를 가중인자로 두는 것이 타당함

##### (나) 검토

###### ① 제1안(10인): 현행 유지

- 가해자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양형인자로 규정하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였음
- 일반양형인자는 권고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등(양형기준 769쪽) 예시적인 성격이 있어 대부분의 사안에 해당하는 인자를 포함시켜도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지 않음
-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없는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피해 회복 없음을 가중인자로 삼은 선례를 찾기는 어려워 양

형인자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② 제2안(4인): 삭제**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 자체를 가중인자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현재 기준으로 수범자의 90% 가까이가 감경인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계속하여 개별 감경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의견임



## V. 양형기준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1. 공문서범죄 ⇨ 견해 일치

가. 의견 요지: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부분 과중함

- 동종 전과에 벌금형이 포함되는 다른 범죄군들에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이라고 정하여 벌금형 전과가 3회 이상에 해당해야 동종 전과에 해당함
- 공문서범죄의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부분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으로도 동종 전과에 해당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함

### 나. 검토: 현행 유지

- 이번 양형기준 정비결과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종 전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벌금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사항에 관한 수정이 이루어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문서범죄의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에는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는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하여 포함된 것으로 생각됨 → 특별가중인자의 수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
- 특별가중인자의 수정은 공문서범죄에 관한 최근 양형자료가 조사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양형기준의 형식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비하는 현 단계에서 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를 수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식품·보건범죄 ⇨ 견해 일치

가. 의견 요지: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동종 전과(10년 이내)” 부분 과중함

- 동종 전과에 벌금형이 포함되는 다른 범죄군들에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이라고 정하여 벌금형 전과는 3회 이상에 해당해야 동종 전과에 해당함
- 식품·보건범죄의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동종 전과(10년 이내)” 부분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으로도 동종 전과에 해당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함

나. 검토: 현행 유지

- 벌금형 집행유예에 관하여 이번 양형기준 정비결과의 정비사항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음
- 식품·보건범죄의 허위표시 유형과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에는 “5년 이내 동종재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는 특별가중인자를 약간 수정하여 포함된 것으로 생각됨 → 특별가중인자의 수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
- 특별가중인자의 수정은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최근 양형자료가 조사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양형기준의 형식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비하는 현 단계에서 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를 수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VI. 향후 일정

- 일시: 2023. 5. 22.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9기 양형위원회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 선정